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03
----------	-------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안호영 · 이용우 · 김태선
이학영 · 박희승 · 이성운
윤준병 · 한병도 · 위성곤
이용선 · 임미애 · 서삼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원 절차나 공청회·청문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옴.

그러나 청원 제도는 주로 서면 심사에 그치거나, 공청회는 소수의 전문가와 단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요 사회·경제 주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하고 토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사회의 복잡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 중요해지는 현실 속에서 현행 제도로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주요 사회·경제 주체 의견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

영되지 못하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기존 제도의 의견수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숙의와 토론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는 사회의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대화기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함(안 제126조의2 신설).

나. 사회적대화기구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공표한 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며, 해당 위원회는 관련 의안 심사 시에 해당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존중하여야 함(안 제126조의3 신설).

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고, 정부 등은 그 처리결과를 6개월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6조의4 신설).

라. 사회적대화기구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사회적대화기구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안 제126조의5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의2(제126조의2부터 제12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사회적 대화

제126조의2(사회적대화기구) ① 국회는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별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대화를 위해 각종 상시적·일시적 협의체 등의 기구(이하 “사회적대화기구”라 한다)를 국회에 둔다.

③ 사회적대화기구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④ 그 밖의 사회적대화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의 보고 및 심사) ① 사회적대화기구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공포한 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관련 의안 심사 시에 해당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6조의4(사회적대화 결과의 이송)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해당 보고서를 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이송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이송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5(사회적대화의 지원) ① 사회적대화기구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사회적대화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대화기구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회적대화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9장의2 사회적 대화</u> <u>제126조의2(사회적대화기구) ①</u> <u>국회는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경우 해당 의제별로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대화(이하 “사회적대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u> <u>② 사회적 대화를 위해 각종 상시적·일시적 협의체 등의 기구(이하 “사회적대화기구”라 한다)를 국회에 둔다.</u> <u>③ 사회적대화기구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 또는 의제별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구성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u> <u>④ 그 밖의 사회적대화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u>

<신 설>

제126조의3(사회적대화 결과의 보고 및 심사) ① 사회적대화 기구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공표한 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송부받은 위원회는 관련 의안 심사 시에 해당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26조의4(사회적대화 결과의 이송)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해당 보고서를 이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이송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이송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5(사회적대화의 지원)

<신 설>

① 사회적대화기구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을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을 둔다.

② 사회적대화에 관한 전문적
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사회적대화기구에 전
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회적대화의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
로 정한다.